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(K-1 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) <신설>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, 현행과 동일) 9.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시행령 제 2 조제 7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(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생략) <신설>	①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현행과 동일) 7.고난도금융투자상품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

		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핵심위험	<추가>	이 투자신탁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[요약정보]	**분류** <추가>	**분류** 고난도금융투자상품 * 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

<table>
<tr>
<td></td>
<td>
투자비용
(생략)

<왕보수·비용 신설>

운용전문인력
(생략)

주요투자 위험
<추가>
</td>
<td>
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
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 종류</th><th colspan="5">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 수수료</th><th>총 보수</th><th>판매 보수</th><th>동종유형 총보수</th><th>총보수·비용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전환가능(A-U)</td><td>납입금액의 1.0% 이내</td><td>1.7526</td><td>0.8000</td><td>0.82</td><td>1.7535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</td><td>없음</td><td>1.9526</td><td>1.0000</td><td>1.46</td><td>1.9646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4544</td><td>0.5018</td><td>1.01</td><td>1.4607</td></tr>
</table>
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주요투자 위험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		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	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9. 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<신설>	**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"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(추가)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21 년 05 월 08 일
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*고난도금융상품제도 시행일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, 고난도금융투자상품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<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마. 고난도금융투자상품
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"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가. 일반위험
<신설></td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가. 일반위험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</tr><tr><td>고난도
금융투
자상품</td><td>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		에 대한 위험	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	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**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~(3) (생략) <신설>	**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**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~(3) (생략, 현행과 동일) (4) 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는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및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할 수 있습니다. ①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며,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②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	

		주문(이하 "청약등"이라 합니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숙려기간"이라 합니다)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. ③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. 투자자는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④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,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,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⑤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야만 청약등이 집행됩니다. ⑥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1.5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) <신설>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, 현행과 동일) 9.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란 법시행령 제 2 조제 7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(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생략) <신설>	①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현행과 동일) 7.고난도금융투자상품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<table>
<tr><td>핵심위험</td><td><추가></td><td>이 투자신탁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>[요약정보]</td><td>분류
<추가>

투자비용
(생략)

<총보수·비용 신설/ C-P 추가></td><td>분류
고난도금융투자상품

* 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
투자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클래스
종류</th><th colspan="5">투자자가 부담하는
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</th></tr>
<tr><th>판매
수수료</th><th>총
보수</th><th>판매
보수</th><th>동종유형
총보수</th><th>총보수·
비용</th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
오프라인(A)</td><td>납입금액의
1.0%
이내</td><td>0.848</td><td>0.240</td><td>0.50</td><td>0.850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
오프라인(C)</td><td>없음</td><td>1.608</td><td>1.000</td><td>1.39</td><td>1.611</td></tr>
<tr><td>수수료선취-
온라인(A-E)</td><td>납입금액의
0.5%
이내</td><td>0.728</td><td>0.120</td><td>0.49</td><td>0.728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
온라인(C-E)</td><td>없음</td><td>1.108</td><td>0.500</td><td>1.03</td><td>1.111</td></tr>
<tr><td>수수료미징구-
오프라인-
개인연금(C-P)</td><td>없음</td><td>1.158</td><td>0.550</td><td>-</td><td>1.158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</td>
<td>운용전문인력
(생략)

주요투자 위험
<추가></td>
<td>운용전문인력
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주요투자 위험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</tr>
<tr><td>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</td><td>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13. 이 투자신탁은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

		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<신설>	**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"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1 년 05 월 08 일 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*고난도금융상품제도 시행일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, 고난도금융투자상품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<신설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"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

<table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가. 일반위험
<신설></td>
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가. 일반위험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</tr>
<tr><td>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</td><td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tr>
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
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
</tr>
<tr>
<td>제 5 부 기타
투자자보호를
위해 필요한
사항</td>
<td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(1)~(3) (생략)
<신설></td>
<td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
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(1)~(3) (생략, 현행과 동일)
(4) 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는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및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 및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①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</td>
</tr>
</table>

		하며,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②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(이하 "청약등"이라 합니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숙려기간"이라 합니다)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. ③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. 투자자는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④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,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,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 ⑤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야만 청약등이 집행됩니다. ⑥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